

# 提案制度의 由來와 運用

## 〈Ⅲ〉

### —美國의 聯邦發明制度를 中心으로—

#### 6. 美國의 外國特許政策

(1947年 大統領命令 第9,865號)

美國의 國家公務員 制案制度 즉 發明補償制度는 特魯먼大統領의 命令 第9,865號로써 現代化되었다고 할 수 있다.

루스벨트大統領의 지시에 따라 特魯먼大統領에게 法務長官報告書가 提出되던 해인 1947年6月14일에 特魯먼大統領에 의해 大統領명령 9,865호 (Executive Order 9865)로써 政府資金으로 이루어진 「發明의 外國에서의 保護에 관한 規程」이 公布 施行되었다. 이는 經濟에 관한 外國政策 實行委員會에 의하여 國務長官이 제출한 勸告書에 依據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政府出資에 의하여 進行된 研究에서 이루어진 發明을 保護하고 그 發明이 外國 政府로부터 取得한 特許를 管理하는 이른바 外國特許保護計劃으로서 實行되고 있다.

이 계획은 당초 다음 목적을 위하여 作成된 것이다.

가) 政府出資의 發明을 근거로 製作된 製品이 外國市場에서 外國의 特許權에 의하여 妨害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나) 미국의 특허권이 외국에 의하여 掌握됨으로써 貴重한 미국의 생산과 貿易이 外國政府에 의하여 統制되는 일이 없도록 防止할 것.

다) 외국정부가 所有하고 있는 外國特許의 使用權을 취득하기 위해서 미국민을 대신해서 去來하는 힘을 政府에 賦與할 것.

이 명령은 商務省에 대하여 合衆國이 政府출자의 研究開發結果에서 이루어진 發明에 대해서 특허의 許與 與否와 現行法下에서 海外에서의 특허

허권 취득·維持에 필요한 모든 業務를 行하며 이러한 發明에 대하여 특허보호의 維持 與否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한 權限을 商務省에 주고 더우기 國務省에도 行政上의 責任의 一部를 지운 것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政府는 政府에 의하거나 政府를 위하여 科學·技術 研究에서 생기는 많은 發明의 權原 또는 外國특허를 出願하는 權利가 현재 또는 장래에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으로 豫測되는 일로부터 政府 자금의 研究로 생기는 發明에 관한 外國에서의 특허보호를 취득함은 政府의 利益이 된다는 것, 그리고 政府의 外國貿易을 獎勵하고 促進하며 發展시키는 政府의 이익을 위하는 일이며 大統領으로서 또 陸·海軍의 最高司令官으로서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個人에게 주어진 權限으로, 그리고 國家의 外交의 聯務와 國內行政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 政府의 省, 機關은 政府에 의해 行해지는 研究 또는 政府자금에 의한 研究에서 생기는 發明에 대해서 可能한 限 政府가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 發明의 權原(Title to inventions) 또는 그 外國에서의 特許出願權을 취득하거나 事後取得 하려는 모든 政府 각 기관은 이 명령의 ㉠에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前記의 發明에 관하여 商務省의 國家公務員發明特許審査會의 會長에 대해 충분하고 계속적인 情報를 제공하고 전기 發明의 어느 것이 外國에서 미국에 의한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와 전기 특허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外國의 權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위 회장에 勸告한다.

전기한 각 기관의 권고는 일반국민의 건강에

대한 발명의 價値를 포함하여 그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産業上, 商業上, 그밖의 가치를 指 摘하는 것으로 한다.

㉔ 商務省審査會의 회장은 위의 발명에 대한 특허의 요구여부와 어느 나라에 그 특허를 출원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그를 위한 政府支出金의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현재의 法律에 따라 海外 特許를 취득하고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手段을 강구하는 한편 이 발명의 특허를 보호한다. 심사회 회장의 위의 결정은 미국의 産業, 商業界, 國務省, 그리고 그 발명을 有効化 하는 기술, 과학, 산업, 상업 또는 다른 經濟的, 社會的 要因에 精通한 다른 정부기관과 충분한 協議를 한 뒤에 이루어진다.

또한 발명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關聯이 있는 제품, 제조방법, 사용에 대해서 현재 가망이 있는 시장이나 생산자만이 판단되는 나라에 있어 有效한 특허보호가 가능한가의 與否를 考察한다.

㉕ 심사회의 회장은 이 명령의 규정 아래에서 미국에서 얻은 외국에서의 특허를 管理하고 그 權限아래서 制定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이 정한 대로 實施許諾을 한다. 미국민은 심사회 회장이 非獨占的, 使用料不要의 原則으로 실시권을 허락함이 公共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公표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원칙에 따라 실시권을 許與한다.

㉖ 국무성은 상무성의 심사회 회장과 협의하여 各國 政府 및 그들 국민이 그밖의 참가국정부의 外國特許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사이의 協定

을 맺는다. 일반국민의 保健문제에 관한 특허에 대해서는 상무성심사회의 회장에 의해 當該國이 本條에 규정된 협정의 當事國 與否에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회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條件이면 국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든 나라 또는 그 국민에 대하여 실시권의 設定을 허락할 수가 있다.

㉗ 原子力委員會에서 그 내용이 이 명령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同委員會 管轄下의 모든 발명과 국가의 安全이란 이유에 따라 機密을 요하는 것으로서 公的으로 分類한 다른 모든 발명은 이 명령의 규정에서 제외된다.

이 명령의 어떠한 규정도 1945년 6월8일자 대통령의명령 9,568호, 동년 8월25일의 9,604호, 46년 12월12일의 9,809호에 의하여 確立된 機密解除의 政策과 訴訟節次에 대신할 수는 없다.

그후 이 명령아래에서 企圖된 외국특허에 관한 책임은 상무성에서 技術院으로 移管되었다. 그러나 외국특허출원·登錄에 필요한 費用調達을 위하여 마련된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도 公布되지 않고 또한 支出法도 제정되지 않았다. 결국 技術院은 일반의 業務資金으로 지출했다.

1950년 1월의 대통령명령 10,095호에 의하여 9,865호에 규정된 상무장관의 직무는 심사회 회장에게 移管되고 그 해 9월6일자로 심사회회장은 行政命令 2호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實質的인 업무는 심사회 회장의 승인아래 執行하게 되었다. <계속>

(C記)

商標登錄公告 發刊

- .....本會는 1974年 12月 31日 以前(商標登錄公報 第74號까지)의 商標登錄.....○
- .....公報를 發刊할 計劃입니다. 이 公報는 會員企業의 要請에 따라 8,875面.....○
- .....을 4.6倍版 60回(卷當 150面)에 걸쳐 分刊하게 되며 收錄될 商標는 總.....○
- .....22,185件이고 油印實費는 全帙에 96,000~114,000원 豫定입니다. 由請.....○
- .....은 本會 事務局(서울 中區 亭洞 2街 48-20, 電話 25-2830, 26-5978)에.....○
- .....서 9월 3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